

2026년 원예작물 생육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정정



농업정책과
(원예특작팀)

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(정정)

1. 개 요

- 사업시행 : 공주시장(읍·면·동장)
- 사업기간 : 2026. 3. ~ 12.
- 지원대상
 - 공주시 소재 농지(과수원)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
 - * 타인 소유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
 - 공주시에 거주하며 과수원예품목을 1,000㎡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(작목반), 농업법인

○ 사 업 비

| 사업량 (종) | 사 업 비 (천원) | | |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
| | 계 | 도비(15%) | 시비(35%) | 자담(50%) | |
| 7 | 302,000 | 45,300 | 105,700 | 151,000 | |

- 사업내용 : 원예·과수전용 생력화 장비 지원
 - 과수: ① 과수전용방제기(승용SS기, 보행SS기), ② 농용고소작업차(다목적리프트기), ③ 동력제초기(보행자주형, 승용형, 부착형,무선형), ④ 동력운반차, ⑤ 전동장비(전동기위 등), ⑥ 꽃가루 채취장비(약채취기, 약정선기, 개약기, 석발기) ⑦ 보행형 관리기
 - 원예: 보행형 관리기
- 목 적: 원예·과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, 농작업 생산성을 향상하고, FTA 개방화 및 농업·농촌의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

2. 추진방향

- 공급기종 부족지역 우선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
-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영농기계화율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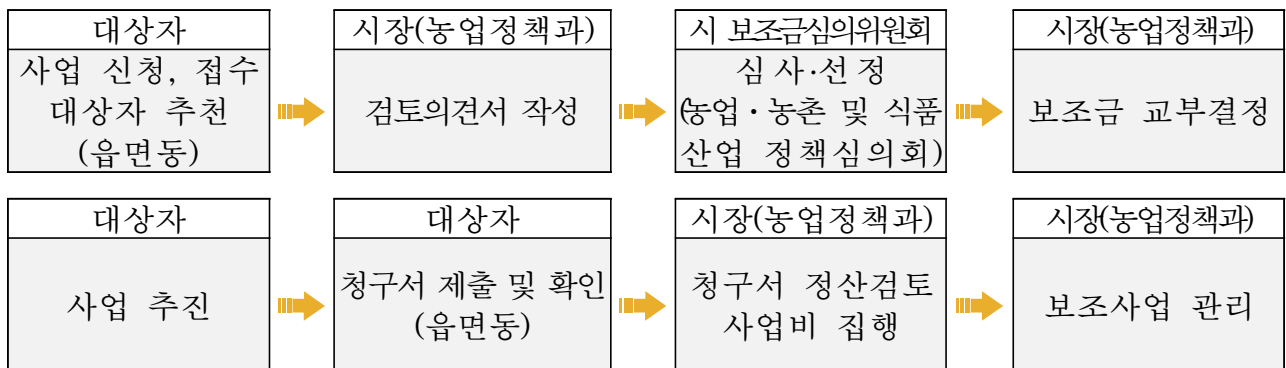
《생력화 장비 기종별 지원단가》

| 구 분 | 원예 | 과수 | | |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
| | 보행형 관리기 | 승용SS기 | 보행SS기 | 승용제초기, 고소작업차 | 동력운반차 (승용포함) | |
| 총사업비(천원) | 3,000 | 18,000 | 8,000 | 12,000 | 4,000 | 범위내 |
| 구 분 | 과수 | | | | | 비 고 |
| | 약채취기 | 약정선기 | 개약기 | 석발기 | 전동장비 (전동가위) | |
| 총사업비(천원) | 21,000 | 8,000 | 12,000 | 6,000 | 400 | 범위내 |

- ※ (SS기) 500ℓ 리터 이상, (고소작업차) 최대높이 2m이상, (승용제초기) 18마력 이상 등
- ※ 기종별 지원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모델등록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용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,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
- ※ 농식품부 꽃가루생산단지 조성사업 단가 준용
- ※보행형 관리기 지원단가 (기존) 2,500천원 → (변경) 3,000천원

3. 세부 추진계획

가. 시행 절차



나.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

- 신청기간: 2026. 3. 31. ~ 4. 14.
-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
-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 <서식 1>, 견적서
- 홍 보: 시 홈페이지 게시, 이·통장회의 활용 홍보, 신청 안내

다. 사업대상 농가 선정

- 읍·면·동에서는 지원 희망자 및 기종을 신청받아 시에 추천
- 시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」 심의를

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(지원우선순위자 가점 부여)

*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

- 농업기계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(비농가)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
- 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
- 시장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
 -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, 친환경·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농가
 - 수출실적 및 참여농업인이 많은 수출전문단지(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)

지원 제외 대상

-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(농가, 법인 등)
- ②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(1~5년)
- ③ 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(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)
- ④ 배 성장조절제 처리 농가 및 동일기종 지원 후 사후관리 미경과 농가

< 교부 신청 제출서류 >

- ① 통장사본 * 자부담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미제출 시 자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
- ㉠ 통장주 도장(서명 페이지) 및 자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각 1부
- ㉡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(계좌)을 별도로 개설해야 함.
- ㉢ 100만원 범위 내(보조금 지급액 기준, 자부담금 제외)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통장 사용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통장으로 사용 가능
- ㉣ 보조금 전용 통장은 개설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

라. 사업추진 요령

- **(지원대상)**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, 미등록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
- **(업체선정)**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, 사후관리(A/S)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
- *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(점검·수리시스템) 확보 등 철저

- 농기계 생산·공급업체와 충남도내 소재 사후봉사업체간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·공급업체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 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할 것

*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

- **(공급시기)**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(상반기) 공급하여 적기활용 도모
 -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시 선정취소 및 사업 포기시 과수 관련 국·도비 사업 지원제한(1~5년간)
- **(공급방법)** 공급 기종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, 단가가 상이할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,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발생된 잔여금액(보조금)은 공급량을 늘려 공급
 - 농업인이 원하는 모델과 공급단가가 상이할 경우 공급단가는 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공급 가능
- **(공급확인)**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 없는 제품을 인수
 - 사업완료시 읍면동에서는 지원농기계 공급여부 확인 후 사후관리(공급)대장 작성 비치 및 5년간 관리
- **(A/S)** 농기계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후관리업소가 '농업기계 공급자(사후관리 업소) 명단' 또는 「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」의 이행계약 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(공급)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「사후관리보증서」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
 - ※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

마. 사후관리 및 지도·감독

-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
- 본 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는 구입 즉시 원예작물 생력화 기계 공급대장(서식 3) 및 사후관리대장(서식 4)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확인, 활용·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(연1회 이상)으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

○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

| 중요재산 | 사후관리기간 | | 처분 제한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|
| | 부터 | 까지 | |
| ○ 부동산 | 등기일 | 10년±3 | 양도·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* 보조결정 시 사업대상자 사전안내 |
| ○ 부동산 종물 (고정식 기계·설비 등) | 설치 완료일 | 10년±3 | |
| ○ 부동산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 | 구입일 | 5년±2 | |

* 사후관리 기간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가격집 참고

- 타인에게 양도,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 후 즉시 도에 결과 보고
- 지원된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, 임대하였을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,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

*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

바.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< 보조금 청구 제출서류 >

- ① 증빙사진 : 사업대상자와 제품(사업추진상황)이 함께 나온 사진 제출
- ② 통장사본- <교부신청시 통장>
 - ㉠ 통장주의 도장 또는 서명 페이지 및 업자에게 사업비 지급이 확인되는 페이지 각 1부
 - ㉡ 교부결정 전 이체내역 여부 확인 필수,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보전 불가

- 시장은 본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확인
- 시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,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
-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**세외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** 원칙으로 하되,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

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

- 사업비 집행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
 - *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
 - *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반드시 확인(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)

4. 행정사항

- 신청 접수(읍·면·동): 2026. 4. 14.한
- 사업 접수 결과 제출(읍·면·동→시): 2026. 4. 16.한
-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: 2026. 3. ~ 4월 중
-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보조금 지급: 2026. 4. ~ 12월

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

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자 | 주소 | | | | |
| | 성명 (조직명) | | | 생년월일 | |
| | 조직일 경우 참가농가수 | | | 연락처 (대표자) | |
| | 신청장비 | <i>과수(동력제초기)</i> | | 재배품목 | |
| 재배현황 | 재배면적 | ha(<i>사과 , 배</i>) | | 생산량 | 톤(<i>사과 , 배</i>) |
| | 비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| 여 , 부 | | 참여면적 | m ² |
| | 친환경 및 GAP재배 | ha | 인증구분 | 인증번호 | |
| | 수출실적 | 톤(2024년 | | 톤, 2025년 | 톤) |
| | 공동출하 | 톤(○○농협 | | 톤, ○○법인 | 톤) |
| 신청내용 | 신청기종 | 계 | | 00기종 | |
| | 수량(대) | | | | |
| | 금액(천원) | | | | |
| <p>상기와 같이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6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자 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주시장 귀하</p> | | | | | |

- ※ 1)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: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
 2) 친환경.GAP 인증관련 서류 : 친환경.GAP 인증농가에 한함
 3) 과실수출실적 : 최근 2년간 실적(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단지)
 4) 공동출하실적 : 과수시행주체별 참여조직에 출하한 실적(증빙서 첨부시 인정)

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계획서

1. 사업 신청농지

| 구분 | 시 | 읍·면·동 | 리 | 지번 | 면적 |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|
|-----|---|-------|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농지1 | | | | | m ² | 여 / 부 |
| 농지2 | | | | | m ² | 여 / 부 |
| 농지3 | | | | | m ² | 여 / 부 |
| 농지4 | | | | | m ² | 여 / 부 |
| 농지5 | | | | | m ² | 여 / 부 |
| 농지6 | | | | | m ² | 여 / 부 |
| 계 | - | - | - | | m ² | 읍면동 담당자 (인) |

※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필지 리스트로 대체 가능

2. 신청 내역

| 기종 | 업 체 명 | 규격 | 단 가(원) | 신청량 | 합 계(원) |
|----|-------|----|--------|-----|--------|
| | | | | | |

3. 자금조달 계획

| 총소요액 | 자 금 조 달 계 획(원)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| 도비 | 시비 | 자 부 담 | | |
| | | | 계 | 자기자금 | 외부자입 |
| | | | | | |

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

일반 현황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농가명 (대표자) | 생년월일 | (만 세) | |
| 주소 | | | |
| 전화번호 | (HP) |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| |

변경신청 내용

| 구분 | 회사명 | 형식명 | 사업량 (대) | 재원별(천원) | | | | 비고 |
|----|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| | | 계 | 도비 | 시비 | 자담 | |
| 당초 | | | | | | | | |
| 변경 | | | | | | | | |

변경사유(상세히 작성)

-
-

위와 같이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 . .

신청자: (인)

공주시장 귀하

서식 4

[앞면]

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

□ 사업추진 현황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|
| 사업자 | 주소 | | | | 지원연도 | |
| | 성명 | | | | 연락처 | |
| 사업비 (천원) | 합계 | | 도비 | 시군비 | 자담 | |
| | | | | | | |
| 공급내역 | 기종명 | | 제조회사 | | 구입일 | |
| | 규격 (모델명) | |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| | 보관장소 | |

□ 사업이행 사진자료(농기계 대수별 1매 작성)

| 농기계 | 관리번호(기대번호) 명판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사진 1 | 사진 2 |

※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

[뒷면]

□ **점 검 표**

| 점검일 | 점검내용 | 확 인 자 | 특이사항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| | 직 성명 (서명) | |
| | | 직 성명 (서명) | |
| | | 직 성명 (서명) | |
| | | 직 성명 (서명) | |
| | | 직 성명 (서명) | |
| | | 직 성명 (서명) | |